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2010 지방선거 빈민운동 공동요구(5/12)

1. 핵심요구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정책 전면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도입하라
2.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퇴거) 중단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사회복지/사회서비스 확충하고 빈곤층 복지지원 확대하라

1. 지역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대폭 확충하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 확대
3. 긴급복지지원 확대하고 험리스, 철거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마련하라
4. 빈곤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개정하라
5.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하라
6. 의료공공성 확충하고 의료급여 확대하여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하라
7. 보육 공공성 강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하라

1. 지자체가 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
2.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3.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4.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5. 희망근로/공공근로 사업 전면 재평가하고 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라

실질적/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1. 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 서울시 여성 홈리스 지원 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 실천하라
3. 홈리스 일자리 대책 강화, 홈리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하라
4. 홈리스 생활자 주거대책 강화하고 쪽방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계획 수립하라
5.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하라
6. 홈리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하라

단속 위주의 노점상대책 철회하고, 노점생존권 보장하라

1. 디자인 서울, 노점시범거리 등 전시행정사업 추진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 중단하라
2. 용역폭력 근절하고 노점상 인권을 보장하라
3. 노점상 몰아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4. 노점말살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2. 세부요구안 및 요구안 해설자료

【1】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정책 전면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도입하라!

- 개발 위주의 정책 전면 수정하고, 개발규제 완화 중단하라.
-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속도 조절을 위한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 생색내기식 순환용주택 공급이 아닌, 전면적인 순환식 개발계획 수립하라.

2.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퇴거) 중단하라!

-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외, 주민이주(퇴거) 및 공가 관리 등 경비 업무 금지하라.
- 지자체별 강제퇴거(철거)를 금지하기 위한 인권지침 및 조례를 제정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 주거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주택 확대하고, 주거이전비 등 재정착 지원대책 확대하라.
- 상가 세입자를 위한 합리적 보상규정 마련하고, 재정착을 위한 임시상가 및 공공임대상 가 공급 규정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 흠티스 지원 조례 마련 및 단신, 다중주택 확보하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비닐하우스촌 전수조사 실시하고, 마을별 주거대책 마련하라.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전면 실시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 서울시/ 각 지자체별 사회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뉴타운/재개발 공공임대(현행 17%)주택 비율, 3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하라.
-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5% 확대 적용하고,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요구안 해설>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정책 전면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도입하라!

•현황 및 문제

용산참사에서 보여 지듯,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도심개발 사업이 보다 빠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시작해 오세훈 시장에게 이어진 '뉴타운 사업' 방식에 의한 것으로, 뉴타운은 도심 광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해, 빠른 속도의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민주거공간의 급격하고 심각한 해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절반에이르는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최근 전세대란은 속도조절 없는 뉴타운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의 집중에 의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사업지구는 26개소(150여개 지구)이지만, 각 뉴타운사업의 실제 개발방식인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300여 개 지구에 이르며, 이 지역에는 약 25만 가구가 거주하고, 주변지역 까지 합하면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권에 있는 어마어마한 개발사업이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사업이 이윤위주의 민간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위주의 공급으로 이어져, 80%이상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다(원주민 재정착율 15% 내외). 단적으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 통계로도 전세가 4천만원 이하 주택이 개발 전 86%였으나, 개발 후 0%로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난한 도시세입자들에게 위기로 닥친다.

속도조절 없는 뉴타운 사업은 2010년 관리처분 인가의 집중으로 인해, 2008년 대비 3배의 주택 멸실이 예상되어, 또 다른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요구

- 개발 위주의 정책 전면 수정하고, 개발규제 완화 중단하라.
-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속도 조절을 위한 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 생색내기식 순환용주택 공급이 아닌, 전면적인 순환식 개발계획 수립하라.

2.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퇴거) 중단하라!

•현황 및 문제

용산참사에서처럼, 세입자들이 극단적 망루투쟁을 선택하게되는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용역깡패들의 행태에 기인한다. 재개발 현장에 조합과 철거계약 체결 후 들어오는 철거용역 업체는, 현재 철거의 업무뿐아니라, 주민들을 이주(퇴거)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때문에 이를위해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1~2년 전인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개발지역에 용역들이 상주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협박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용산 철거민들이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망루에 올라갔다'고 할 정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개발지역은 각종 폭력이 횡횡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때문에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외의 업무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인권지침 및 조례 실행력 있게 만들어, 더 이상 반 인권적인 강제철거를 막아야한다.

•요구

- 철거용역업체의 철거업무 외, 주민이주(퇴거) 및 공가 관리 등 경비 업무 금지하라.
- 지자체별 강제퇴거(철거)를 금지하기 위한 인권지침 및 조례를 제정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현황 및 문제

정부와 서울시는 순환용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 먼저 순환용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2010년 500호의 순환용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2010년에 공급대비 사라지는 주택은 약 2만호에 달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달다. 또한 현행 재개발에서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과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으며, 무시되기 일쑤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세값 상승세에서는, 현행 주거이전비로는 인근 이주 후 재정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2000년대 중반이후 도심개발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상가 세입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그러나 빠른 도심개발이 진행되는 반면,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상가세입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은 평가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권리금 인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합리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상가 세입자들의 제정착을 위해, 공사 기간중 임시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상가와 입주 후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확보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

- 주거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주택 확대하고, 주거이전비 등 재정착 지원대책 확대하라.
- 상가 세입자를 위한 합리적 보상규정 마련하고, 재정착을 위한 임시상가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규정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현황 및 문제

지난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되었지만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영국처럼 기준미달 가구의 처지를 개선할 강력한 법적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참조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흠파스 및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공공임대주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 부분의 접근 방법 및 해결을 위한 정책조차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과 단계별 접근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최악의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정책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요구

- 흠파스 지원 조례 마련 및 단신, 다중주택 확보하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비닐하우스촌 전수조사 실시하고, 마을별 주거대책 마련하라.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전면 실시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현황 및 문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7%(서울 4.5%)에 그쳐, 대부분 선진국의 임대주택비율이 20%이상인 것에 비하면, 극심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공주택의 부족은 민간시장의 주택 왜곡 구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서민주거정책으로 포장된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주택에 밀려, 대폭 축소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부족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민간 주택시장에만 맡겨져 심각한 주거불안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요구

- 서울시/ 각 지자체별 사회주택 확보계획 수립하라.
- 뉴타운/재개발 공공임대(현행 17%)주택 비율, 3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현황

현재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8%(2008, 통계청)가 넘었고, 서울은 93.2%로 집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서울시내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민의 절반(41%, 서울 54%)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월세 등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지만,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46%, 90년~2005년)은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집부자 1인이 1,083채를, 상위 100인이 1인당 155채의 집을 소유하는, 왜곡된 주택 소유구조를 만들어 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도심개발로 인해, 기록적인 전세값의 폭등으로 세입자들의 지위가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황이다.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임대기간이 2년으로 짧고, 그 이후 집주인 맘대로 집값을 올릴 수 있어, 세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과도한 전월세 부담의 고통과 임대업자들의 과다한 폭리, 투기로 인한 기형적 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세입자는 2년 후에 계약을 일정한 기간(최소 6년)까지 계속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

•요구

-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하라.
-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 5% 확대 적용하고,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2】 지역사회 복지/사회서비스 확충하고 빈곤층 복지 지원 대폭 확대하라

1. 지역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대폭 확충하라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하고 사회복지 공적 전달체계 마련하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 확대
 - 지방정부 빈곤실태조사 및 빈곤층 생애주기별 지원 기준 마련하라
 -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 대책 수립 및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층 종합지원계획 수립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대책 수립
3. 긴급복지지원 확대하고 흠티스, 철거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마련하라
 - 의료/주거/생계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긴급복지지원 확대방안 마련하라
 - 흠티스 생활자의 거처 마련, 주거박탈상황에 놓인 개발 지역 철거민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제도 마련하라
4. 빈곤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개정하라
 -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 빈곤층으로 확대하라
 - 면책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라
 - 보증부대출 아닌 무보증 무담보 대출 확대
 - 상환 조건과 대출금액의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라
5.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하라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하라
 -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하라
 - 장애인 주거권 보장과 소득보장 대책 마련하고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하라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라
 - 장애인 고용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 저상버스 확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하라
6. 의료공공성 확충하고 의료급여 확대하여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하라
 -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금 조성하라
 - 도시보건지소(지역주민건강센터) 확충하고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 설치하라
 -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하라
7. 보육 공공성 강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고 무상보육 실현방안 마련하라
 - 초, 중, 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라

- 지역 사회서비스 센터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라
- 복지/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하라

<요구안 해설 보완>

1) 서울시 예산 현황 문제점과 빈곤층 복지지원 현실

- 2010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4조 835억 원으로 서울시 총계예산규모의 19.2%에 불과
- 사회복지 예산은 2006년부터 연평균 18% 증가하여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폭이 줄어 2009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2010년 예산은 9.3% 증가에 그침. 지난 정부에서 제도화된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노인장기요양, 사회서비스 사업 등 국고사업의 운영상의 확대나, 급여수준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이 대부분. “복지에 미쳤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 무색.
- 2010년도 감액예산 편성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두드러지며, ‘긴급복지 지원 및 템세계층 특별지원’‘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등에서 큰 폭으로 삭감됨. 주로 빈곤층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0.28%밖에 되지 않는 서울형 복지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등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형편.
- 2009년 3월 기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만 7695명으로 서울시 절대빈곤 추정인구(서울시 절대빈곤을 추정 8.8%-2000년 센서스 기준) 92만 명의 22.6%에 불과. 상대빈곤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기준 12.5%에 달함. ‘서울형 복지’를 홍보하기 이전에 빈곤 실태부터 파악하여야 할 것.
- 서울형 어린이집 일부 시행이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사업에 있어 민간영리기업의 난립을 제어하고 공적 공급기관과 시설을 확충하여야 함.
- 또한, 지역간 예산 불균형 상황이 심각. 지역별 재정격차는 점차 심각해져, 2009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중랑구 30.5%, 노원구 30.5%, 강북구 30.9%, 관악구 33.1%, 금천구 35.5%에 비해, 서초구 88.9%, 중구 87.6%, 강남구 86.8%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09년 기준 일반예산대비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많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대규모로 조성된 노원구(48%)와 강서구(42%)이며,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도 39%대를 보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초구(16.5%)과 종로구(18%)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낮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보완)

3)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흠파스 생활자의 거처 마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의 주거박탈을 막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 제도 마련 해설

① 흠파스, 개발사업 주민들의 주거위기

노숙인보호사업이 실시된 이후, 정부의 주거대책은 쉼터제공 즉 시설중심정책이 주가 되었다. 이에 민간은 쉼터 이후 거처 혹은 탈거리노숙을 위한 거처를 고민해왔고 2006년부터 10여개의 거리노숙인 지원단체 및 기관이 민간 기금의 지원으로 2, 3개월가량의 주거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정책의 발판을 마련하는 흠파스 주거대책을 마련해왔다. 이 사업은 채 및 500여명의 거리노숙인이 무보증월세의 거처를 확보하여 거리생활을 탈피하게 하였고 공공부조 수급별 회득,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체계, 건강회복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제서게 했다. 특히나 주거유지율이 80%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았지만 여타 노숙인지원사업보다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매해 예산확보가 불투명했고 해마다 사업시행에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를 기본으로 급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극한의 빈곤상태로 최소한의 주거지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리 흠파스들은 오히려 배제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지역의 철거민들 역시 사업시행인가와 명도집행 등에 따른 강제 철거로 급작스러운 주거지 박탈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갑작스러운 주택 철거로 인한 주거지 멸실에 대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구책을 찾아야만 하는 현실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유에 거리 노숙과 같은 흠파스 상태,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멸실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긴급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템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흠파스, 철거로 인한 주택멸실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 역시 작년 대비 53억 삭감 편성되었다.

② 요구

-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의료, 교육, 주거, 생계비 지원 확대 계획 필요.
- 거리 흠파스, 철거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 제공
 - 서울시는 '저소득 템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흠파스,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철거민을 포함하여 현행 최장 3개월 간 지원할 수 있는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저소득 템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직권·신청 조사→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 등 심의·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방식은 긴급한 지원 소요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으므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 위기상황의 발생을 확인한 후 선지원, 사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4) 빈곤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조례 제/개정

- 생활안정자금은 정확하게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어 지자체별로 자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 조례는 해당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응자기금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게 2~3%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임.
-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영업에 지원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전월세 보증금, 학자금, 재난시 생활비, 병원비 등의 용도에 지원됨.
- 연 2~3% 정도로 응자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편임.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하고 2년거치 2년상환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인해 빈곤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짐. 하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는 이와 관련된 조례나 제도가 없어짐.
- 면책자, 신용불량자, 어느 자치구의 경우 노점의 경우도 이 제도에서 제외대상이 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에게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이와 같이 대출해주는 방식은 아니어야 할 것임. 한편 유사시 빈곤층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나 기관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제주도의 관련 조례가 가장 모범적임.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이의 이용률이 높은 편임. ① 일단 대출액이 주민소득자금이 7000만원(타 자치구는 대부분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2000만원(타 자치구는 대부분 1000만원)임. 이 중에서 2000만원 내에서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고 있음. 타 자치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증명되어도 일정액 이상의 재산조건을 갖춘 보증인을 세워야 대출해주고 있음. ② 또한 상환 조건이 주민소득자금의 경우 5년 거치 5년 상환(타 자치구의 경우 2년 거치 2년 상환), 생활안정자금의

-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타 자치구의 경우 2년 거치 2년 상환)임. ③ 특히 제주도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빈곤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④ 제주도는 주민소득자금을 자활자금으로 명하고 있는데 실제 이의 용도를 자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음.
- 하여 제주도의 관련 조례를 기본으로 재구성하여 다른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제/개정 할 것을 촉구, 질의하려고 함.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주요하게 제기하려 함.

1)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 빈곤층으로 대상 확대

현재는 차상위 계층 정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빈곤층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함.

2) 면책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

- 파산면책제도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이들은 법적으로 채무가 없는 상태임. 또한 면책자를 위와 같은 제도에서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면책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 할 수 있음. 면책자라 할지라도 빈곤층이고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이 인정된다면 면책자에게도 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는 해당 자치구들이 이 제도 운영을 금융권에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임. 운영을 직접하거나 해당 금융권에게 면책자를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3) 보증부대출 아닌 무보증 무담보 대출 확대

이 제도의 독소조항이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임. 그것도 일정정도 재산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빈곤층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음. 2000만원 내에서 무담보 무보증대출을 해주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이 제도의 이용률이 높은 것에서 보여지듯 실질적인 빈곤층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증부 대출이 아닌 무보증 무담보 대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4) 상환 조건과 대출금액의 현실화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는 조건은 빈곤층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환조건임. 상환기한을 빈곤층의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대출금액의 경우도 제주도의 관련 조례가 현실적으로 보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7000만원(타 자치구는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타 자치구는 1000만원).

5) 장애인 복지 요구(서울시) - 세부 설명자료는 별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하라

- ① 최중증장애인에게 월300시간 보장
- ② 긴급지원 확대 보장 (탈시설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등에 긴급지원)
- ③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 ④ 활동보조대상 2, 3급 확대
- ⑤ 자부담 지원
- ⑥ 장애등급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⑦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하락으로 서비스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구제조치

-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하라

- ①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 *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TFT 구성
 -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 ② 자립생활가정 확대
 - * 매년 50가구 확대, 2015년까지 250가구 설치

* 거주장애인에 대한 독거인정 * 자립생활가정 1인 1실, 3인 이내 거주제한

③ 체험홈 확대

* 매년 20개 확대, 2015년까지 100가구 설치

* 자립생활이념에 맞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탁운영

* 활동보조 추가지원 1인당 120시간 지원 * 체험홈 1인 1실, 3인 이내 거주제한

④ 퇴소정착금 확대

* 1인당 1천만원으로 확대 지급 * 인원확대 : 매년 60명

* 지급방법 : 시설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제공

- 장애인 주거권 보장과 소득보장 대책 마련하고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하라

<주거권>

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확대

* 매년 200가구 확대, 2015년까지 1,000가구 확대

② 주택개조 지원사업 확대

* 가구당 1천만원, 매년 200가구 지원

③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비 지원

* 월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1,000가구, 월세 평균 30만원 지원

④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1순위 보장

<소득보장>

① 서울시장애수당 추가지원 유지

②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자립생활지원계획>

①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라

① 장애인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실시

② 서울시 중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③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장애인 고용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① 서울시 장애인의무고용 4% 확대

* 장애인고용률 4%이하 기관에 대해 신규채용시 장애인6% 채용

② 서울시 근로지원서비스 시행

* 매년 신규50명 확대, 2015년까지 250명 확대.

* 15% 자부담 철회

* 근로시간 180시간 확대

③ 서울시 지원고용사업 시행

-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 ①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 ③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

- 저상버스 확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 ① 저상버스 2011년 31.5%, 2013년 50% 이상 도입 계획 준수
- ② 저상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및 이용 편의시스템 마련
- ③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현 300대에서 500대로 증차
- ④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와 환승구간에 즉각 엘리베이터 설치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하라

- ①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을 위한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 ②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설치 및 지원
- ③ 장애인플라자 건립

6) 의료공공성 확충하고 의료급여 확대하여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하라

-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금 조성하라
- 도시보건지소(지역주민건강센터) 확충하고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 설치하라
-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하라

7) 공보육확충, 무상급식실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 친환경·무상급식 주요 요구

1.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교급식법 개정
1. 결식아동 중앙정부 예산 확보와 아동복지법 개정
1.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1. 농장에서 학교까지!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1. 예외 없는 직영급식 전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성북 사회서비스 요구

1.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운영 체계를 마련하라
 - 1) 지역 사회서비스 공적 운영 체계 마련 : 지역 사회서비스 센터 설치
 - 2) 자자체 공급, 운영 책임 강화
2.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우선 공급하라
 - 1) 공급기관 현황 파악 및 필요욕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공급기관 지원 강화
 - 2) 공공 공급 기관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경우도 지역 사회서비스위원회가 인증한 비영리기관이 공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 3) 지역 사회서비스 특별예산 편성 및 필요에 따른 적정서비스 확대하라!

3.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 1)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라
 - 2)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정규직, 월급제로 전환하라

【3】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하라

1. 지자체가 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
 -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례제정)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하라
2.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전담인력 대폭 확대하라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라
 - 고용지원센터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하라
3.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 서울시 고용(민간위탁 등 포함)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하라
 -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준수제 실시
 -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4.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자활참여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자활사업 지원 확대하고 안정적 자활 일자리 공급계획 마련하라
5. 희망근로/공공근로 사업 전면 재평가하고 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라
 - 단기간 졸속적 일자리로 비판받는 희망근로사업 문제점 대책 마련하라
 -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라
 - 현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기간을 연장하고 퇴직금, 실업급여 적용하라
 - 공공근로 사업이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이고 실질적 자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
 -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철회하라

<요구안 해설 보완>

【4】 실질적/ 체계적인 흠티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1. 서울시 흠티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 서울시 여성 흠티스 지원 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 실천하라
3. 흠티스 일자리 대책 강화, 흠티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하라
4. 흠티스 생활자 주거대책 강화하고 쪽방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계획 수립하라
5. 흠티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하라
6. 흠티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하라

<요구안 해설>

1) 서울시 흠티스 지원 조례 제정

① 서울시 흠티스 정책 현황과 문제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목된 실직노숙인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응급구호성격으로 시작된 노숙인보호사업은 불 안정한 지원의 문제를 노정하였다. 이에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내 부랑인사업에 노숙인을 추가하였고, 2005년 <부랑인 및 노숙인시설 설치·운영규칙>을 마련해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시설설치기준 및 종사자기준, 쉼터입퇴소절차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규칙에 정의된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 기준 없이 현실 편의적인 방식의 구분에 불과하며, 용어 논란¹⁾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양자의 복지지원체계를 통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같은 해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부랑인 및 노숙인'사업이, 전자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후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로써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방기는 심화되었고 지방정부는 행정편의(경제문화도시마케팅의 사전정지 작업으로서의 노숙인 복지-노숙자율정비 구역 등)에 의해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노숙인 복지 시행초기인 2000년부터 쪽방상담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은 위 시행 규칙에서도 배제, 주거지원 사업에 한정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만이 있을 뿐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쪽방주민 복지지원에 대한 제반 사업의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듯 노숙인, 부랑인, 쪽방거주민 등 흠티스상태에 처한 이들의 복지지원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 수준을 규정하고, 계획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흠티스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기초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최근 '흡티스'에 대한 용어논란에서 볼 수 있듯, 관련 복지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흠티스 대중들의 권리 의식에 기초한 요구활동, 사회적인 발언들을 조직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지방분권사업으로 인한 노숙인복지, 부랑인복지,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은 지자체 관할 업무인 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더욱이 전시행정(희망의인문학과 같은 서울형 복지)으로 치닫고 있는 당면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흠티스 복지 정책의 방향과 수준은 타 지자체의 모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이를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복지 정책의 총량은 증가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흠티스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데 역부족인 반면 흠티스 생활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대립을 조성하는 정책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흠티스 지원사업의 근간을 조성하여 체계적, 통합적, 실질적인 흠티스 복지를 실현하

1)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부랑인과 노숙인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이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부랑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흠티스로 통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 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한글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 5일 '부랑인·노숙인'으로 변경,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기 위해 서울시 흄리스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② 서울시 흄리스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목적과 정의

- 흄리스 복지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흄리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적절한 용어 구사가 필요하나 1)현행 서울시 복지 지원 계층인 노숙인, 부랑인, 쪽방주민 2)비주택 주거불안계층(고시원, 피씨방 등 생활자)을 명시하도록 함.

● 실태조사

- 연 1회, 정기적인 서울시 흄리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흄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규모와 생활실태, 복지 욕구를 파악하도록 함.
- 시장은 이 결과에 따라 연간 '흡리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지원사업

- 흄리스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일자리 지원 / 쪽방지역 재생 및 주거지원 / 의료지원 / 시설운영지원 / 거리 흄리스 현장지원 / 명의도용 · 금융피해 등 신용회복지원 / 실태조사).

● 시설설치와 운영

-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입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시설의 설치 기준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에 준하되, 1실 당 이용인원 규정을 두도록 함.

● 기타

- 보호 사업 기관에 대한 예산 보조 및 지도·감독
-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2) 서울시 여성 흄리스 지원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실천

① 서울시 여성 노숙인정책, 시설 정책의 문제점

여성 흄리스들은 거리와 불안정 거처에서 온갖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한의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 흄리스들은 지하도에서 조차 잠자리를 깔지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는 고단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2009년 12월 현재 노숙인을 위한 응급 잠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보호센터는 서울지역 5개소, 전국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여성을 위한 보호 시설은 단 한군데도 없다. 그간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여성들이 노숙상황에서 부딪히고 있는 폭력, 성폭력, 동사 등의 위험을 고지하고, 여성을 위한 상담보호센터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05년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던 소규모의 미지원 상담보호센터도 2009년 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폐쇄되면서, 이제 갑자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여성 흄리스들은 영락없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 노숙인 쉼터 역시 문제다. 여성들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서울지역의 경우 정원 규모 65명(3개소)에 불과해 이미 과밀 상태에 처해 있다.

노숙인 쉼터의 특징이기도 한, 소규모쉼터는 대형시설에 비해 지역사회와 가까이 위치할 수 있고 주민과의 교류도 꾀할 수 있어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을 기본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노숙인 쉼터의 경우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1조

에 의한 인원대비 면적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규모쉼터를 지원해 그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육조어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응급구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한때 1999년 108개소 달하던 노숙인 쉼터는 현재 37개소에 불과해 과밀화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소규모쉼터 통폐합'을 공식화하여 정원 20인 이하, 정원 40인 중 현원 20인 이하의 쉼터는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였는데 현재의 쉼터 감소는 서울시의 규모의 경제 논리를 적용한 정책의 후파인 것이다. 실제 올 해 노숙인 쉼터 예산은 작년 대비 10억 원 이상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서울시는 노숙인 쉼터 입소를 정책 목표로 수행하고 있으나, 쉼터는 이미 과밀,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②요구

- 여성 홈리스를 위한 상담보호센터(현장지원체계) 설치 및 쉼터 확충
- 거리, 불안정 거처에서 생활하거나 퇴거 위기에 몰린 여성 홈리스들의 상담 및 응급잠자리, 일자리 연계 등 현장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
- 여성 노숙인 쉼터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여성 노숙인 쉼터 설치.
- 소규모 노숙인 쉼터 통폐합 철회, 쉼터의 기능보강
- 규모의 경제,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빌미로 한 소규모 쉼터에 대한 점진적 통폐합 계획 철회.
-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 실천을 위한 소규모 쉼터 확대 설치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충족을 위한 서울시 계획 수립, 그에 따른 쉼터의 기능보강계획 마련.

3) 홈리스 일자리 대책 강화, 홈리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

①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노동 욕구와는 달리, 서울시 차원의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노숙생활자에 대한 욕구 파악과 그에 근거한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은 한시적 대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일자리 정책으로 크게 1)일자리 갖기 사업 2)특별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고사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서울시의 핵심 일자리 사업인 '일자리 갖기 사업'은 대통령이 시장 재임 시 첫 시행한 것으로, 2007년 참여자의 중도탈락 또는 포기 비율 52%라는 통계가 말하듯 일자리의 적정성, 근로 현장에서 차별문제 등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참여 대상에 있어 '쉼터 입소자 및 주거확보 가능성이 높은 자를 우선 배정'하여, 임금이 그 나마 높은 일자리의 경우 거리 생활자들은 원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서울형 복지로 선전하고 있는 '희망의 인문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의 인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인문학 강좌를 일자리 정책에 혼용하는 편파행정을 멘치고 있다. 더욱이 올 해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무려 20억 원 이상 삭감한 채 통과 되었고, 참여 가능 인원도 올 해 500명에서 20여 년에는 400명으로 감소시켰다. 그나마 이 역시 확보된 일자리가 아닌, 시기적으로 발굴의 인연계하는 형태로 4월 초에 혼. 그의 절반 밖에 달성하4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복지 초기부터 지속 시행됐던 '숲가꾸기 근로사업' 예산도 올 해, 참절반 책적으로 감액에서 20연계, 서울시가 '서울형 복지정책'으로 선전하고 있는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전체 노숙인 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 이상 증액되는 이해되지 않는 편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홈리스상태에 처한 이들이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예산은 줄이고, 서울형 복지 예산은 증액하는 예산 편성을 정책의 목표가 선전인지 홈리스들의 삶의 질 개선인 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일자리 갖기 사업'의 진행 미진으로 참여가 제한된 노숙인들의 노동수요는 자연스럽게 '특별자활사업'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급여액이 391,000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다, 더욱이 주거지 진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 정책으로 부르기 조차 민망할 정도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는 동절기가 지나면 참여자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평계로 노동 일수를 줄여 급여를 줄이는 방식을 취했는데 올 해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올 해 동절기(12월~2월) 월 평균 850명이었던 특별자활근로 참가인원을 3월 456명으로 절반가까이砍감시켰다. 이렇듯 서울시는 홈리스 생활자들의 일자리 욕구에 대해 한 없이 미달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반면 자활이데올로기를 강제하고, 희망의 인문학과 같은 선전 사업에 홈리스 생활자들을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②요구

- 적절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욕구 조사에 기반한 적절한 일자리 마련
-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가 아닌 지속 참여 가능한 일자리 제공
- 근로시간, 근로조건, 작업내용, 임금체계 등을 포함한 연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공통 운영지침의 수립
- 서울시 선전사업을 위한 노숙인 복지 도구화 중단
- 희망의인문학과 일자리 사업 연동 철회(희망의 인문학은 참여자 선택에 따른 교육 복지의 역할 수행)
- 쉼터 입소자를 우선으로 한 일자리 참여 우선순위 철회

4)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화, 쪽방 재개발 중단 및 지역 재생 계획 수립

①서울시 주거대책의 문제점

거리생활을 탈피하는 데 가장 접근성 높은 거처는 바로 쪽방이나 고시원 등과 같은 저렴주 거지이다. 이곳은 최저주거기준에 분명 미달하는 곳이지만, 무보증월세 혹은 일세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도심 내 거처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숙예방과 탈 노숙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처는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모할 수 지방정부의 해소책으로 저렴 주거 지역에 지속적인 철거가 단행되고 있는가하면, 해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이후 거처에 대한 고민으로 '단신계층용매입임대주택'(2006년), '쪽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2007년)이라는 주거대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노숙인쉼터 입소자 혹은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상향 확보라는 측면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외에 주거확보가 가장 시급한 홈리스를 포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유형인 다가구주택이 주된 형태로 배정됨에 따라 '사생활이 보장되고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상실하고, '또 하나의 공동생활을 강제하는 거처'가 되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20%가 단독가구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빈곤층의 경우는 평균가구원수가 더 작다. 게다가 홈리스의 경우 단독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빈곤층을 목표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소규모가구에 적합한 주택형태이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가구구성의 특징을 임대주택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②요구

- 쪽방 철거 중단, 지역 재생
- 서울지역 쪽방 밀집촌의 대부분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 예정인 곳임. 서울시는 이를 저렴주 거가 갖는 '사회적 유효성'을 인식하고 철거를 금지해야 함(저렴주거 철거가 홈리스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뉴욕시 등은 한시적 철거금지를 규정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SRO(1실점유로 우리나라의 쪽방이나 고시원과 유사한 거처)에 대해 개보수비용 보조, 시설설비기준을 마련했던 바 있음).
- 도시빈민 최후의 거처로 활용되고 있는 쪽방이나, 고시원 노후한 여관·여인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순기능적 활용 방안 마련

- 흠파스 생활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 대책 마련
-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가구 흠파스 생활자를 위한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을 매입 공급하거나 기존 주택을 적합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파트너쉽을 형성.

5) 흠파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① 서울시 의료대책의 문제점

매해 수백 명의 노숙인이 거리와 병상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1999년 103명으로 집계된 서울지역 노숙인 사망자수는 2003년 321명을 기록하며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 사망률이 일반인보에 3.1배나 높게 조사됐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시의 의료대책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노숙생활의 참담함은 '노숙인 생존율'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생활 1년이 경과되면 1.30%가 사망을 하고 5년이 경과할 때 8.63%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돼, 5~경과 사이에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망원인 중 상당 수(예방 가능한 '순상, 중독 중독외인성 질환%가 3.3%)과 간질환/감염성질환% 15.7) 등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대책은 더욱 역진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의료구호비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매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연체시키더니(2009년도 연체액 4억원), 건강보험의 유지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의료구호비 지급을 중단했다. 건강보험의 유지되는 노숙인은 그나마 가족관계가 표면적인 상태로나마 유지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나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유무가 노숙 종결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노숙인에 대해 차별적인 의료지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노숙인 건강권 침해사례가 끝없이 누적될 것이다.

② 요구

- 현장 진료 체계 강화
 - 현장 진료소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 획득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 지원기능 강화. 진료소의 검진, 치료기능 강화.
 - 주제(응급의료,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별 질환 관리체계 구축(지역정신보건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정신질환 등으로 의뢰되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거리로 퇴원해 나왔을 때 사후관리나 재활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질병관리체계, 퇴원 후 질환관리를 위한 주거지원 연계 방안 마련 등)
- 건강보험 유지자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
 - 현재 쉼터 입소 건강보험 유지자의 경우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거리 노숙인은 이용 불가 함. 이는 명백한 거리노숙인에 대한 차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임.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노숙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 비급여 항목 철폐, 의료지원 예산 강화
 - 노숙인 의료지원은 행려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같이 의료비 지급 불능 상태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비급여 구분없이 무상진료하도록 해야 함. 이는 일정 부분 매년 서울시가 의료예산을 적자 편성함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조건 반사에 따른 영향이 있음으로 적정한 의료구호비 편성이 수반되어야 함.

6) 흠파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

① 서울시 명의도용 대책, 신용회복 대책의 문제점

노숙인 등 빈곤계층의 명의도용 문제는 심각하다. 2006년 당시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노숙생활자 넷 중 한 명은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범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그 숫자는 계속 누적되고, 날로 그 수법은 정교해지고 있다. 대포차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 걸림돌이 되거나 수많은 세금, 2차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부동산 명의선택으로 인해 세금은 물론 수급권을 포함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바지사장(허위사업자)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 명의도용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지 세금, 채무와 같은 금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공모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벌금은 물론 인신구속과 같은 형사 처벌 또한 병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서울시의 인식과 같이 이러한 범죄를 막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은 일부 명의도용 범죄는 예방할지언정 엄청난 낙인과 그에 따른 이차 삼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죄악수인 것으로, 홈리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사망선고와 다를 것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명의도용 예방사업'을 설계하였다가 인권위, 홈리스 운동단체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애초 서울시는 대출 불가자로 등록되면 명의도용이 예방될 것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또 철회를 해 주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위 계획의 철회 이후 서울시는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에 대한 지원책에만 한정할 뿐,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 해결과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예방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② 요구

- 노숙 현장 중심의 경제 범죄 예방 대책 마련

- 기 발생한, 현재 역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 대상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갖춰야 함. 상담 사례를 통해 보면 명의도용 범죄자들의 활동 무대는 대다수 노숙 밀집지역임을 볼 때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기존 노숙인 현장지원체계와 연계되도록 하되 치안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와 같이 현장 억지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체계로 편성해야 함.

- '홈리스'로 한정한 것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대책 마련

-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아닌, 특정 문제에 작용하는 대책으로 출발점을 선호해야 함. 집단을 특정할 경우 그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필연적인 것임. 홈리스에 대한 명의도용 예방책은 홈리스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명의도용 범죄의 발생 구조에 작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작년 9월 법무연수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7.3%가 명의도용 범죄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명의도용 범죄의 유인력이 되고 있는 생계 수단에 대한 일자리, 주거 등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접근 유인성을 감소시켜야 함.

- 기 발생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 범죄 피해로 인한 조세 체납의 경우 파산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포차의 경우 소유권 분쟁,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폐차 및 명의이전이 불가능해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책을 마련해야 함.

【5】 단속 위주의 노점상 대책 철회하고, 노점 생존권 보장하라

1. 디자인 서울, 노점시범거리 등 전시행정사업 추진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 중단하라

2. 용역폭력 근절하고 노점상 인권을 보장하라
3. 노점상 몰아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4. 노점말살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요구안 해설>

1) 디자인 서울 등 전시행정 중단, 노점상 생존권 보장

- 현행 및 문제점: 청계천 복원공사, 서울 디자인 거리, 동대문패션플라자&파크,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사업, 영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지자체는 각종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노점상을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다.

깨끗하고 세련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점상을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노점상의 생계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각종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그 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을 썩쓸이 하려고만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현대화 하고 디자인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생태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방향: 각종 도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 역사, 생태, 구성원의 삶 등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노점상을 단지 청소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문화의 일부분,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2) 가로정비를 위한 민간용역 발주 비용 예산 삭감 및 용역업체를 통한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폭력행위 규제 및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각 지자체별로 많게는 21억(2007년 고양시), 적게는 1,2억(2009년 마포구 3억)의 예산들 가로정비를 위한 민간용역 비용으로 사용한다. 시민의 혈세로 용역의 폭력을 사들이는 것이다. 또 연말이 되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용역비용을 다 사용하기 위해 노점 단속을 하기도 한다. 마치 보도블럭을 갈듯이 말이다.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다.

또 용역업체를 통한 노점단속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용역깡패 고용과 불법단속을 조장하는 지자체-용역업체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 용역업체는 지자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야 하고 책임은 용역업체가 져야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는 용역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하게 되고, 단속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나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교육, 복장, 무기, 신고 등 기본적 사항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역 증원, 투입을 강요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 등을 위해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원을 증가시키도록 요청하면 용역업체는 '강제철거 아르바이트'를 인터넷 등으로 불법광고하고 불법고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조직폭력배 출신일 수밖에 없는 용역업체들이 조직폭력배 라인을 통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업무 회피, 단속완료 기간 연기 등에 대해 용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김에 따라 비용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용역업체들이 무리하게 폭력적 단속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경비업법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문제지만,

- 개선방향: 각 지자체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 지자체 책임 강화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

3)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부여 민속 5일장 현대화 사업, 홍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부산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 지자체는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각 재래시장의 특성을 죽이고, 현대화된 건물만 자리 잡게 한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재래시장 안팎에서 자리 잡고 함께 재래시장의 상권과 문화를 구성하던 노점상은 쫓겨난다.

- 개선방향: 획일화 되고, 일률적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고, 각 장의 특성에 맞고, 노점상이 쫓겨나지 않는 재래시장 개발 사업을 구상해야한다.

4) 노점관리대책 및 노점디자인 거리 철회

-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서울 디자인 서울 정책과 함께 발표된 노점관리대책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점관리대책의 요지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각 지자체에서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점 관리의 실질적인 방향은 '노점총량제', '노점감축'이다. 기존 노점상 중,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노점을 선별하고(거주지, 재산정도 등) 또 엄격한 관리(품목, 시간, 장소, 규격 등)를 통해 점진적으로 노점을 퇴출시켜 나가고(1년마다 계약갱신, 삼진 아웃제, 별점제) 종국적으로는 노점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노점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고양, 광명, 대구, 안산, 안양 등 전국 각지로 번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점 디자인 거리는 이러한 노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노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노점감축, 밀살 정책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개선방향: 일단 노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생계에 대한 고민 하에서 노점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또 이 과정에서 노점 당사자를 참여 시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없어야 한다.